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일부 개정에 따라
교육과정 영향 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법정 의무교육 법령 제·개정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 요청기관 간 사전
협의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범위, 내용, 절차 등 규정(안
제43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예정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)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교육 횟수 및 시간에 관한 사항
3.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교육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협의체의 의견을 붙여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

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사항에 대해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·의결한다.

④ 국가교육위원회는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·의결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 의결하지 못했을 때는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

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·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3조의3(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)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</u> <u>2. 교육 횟수 및 시간에 관한 사항</u> <u>3.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</u> <u>4. 기타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</u> <u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교육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협의체의 의견을 붙여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</u> <u>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</u>

따른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·의결한다.

④ 국가교육위원회는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·의결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 의결하지 못했을 때는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·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6717
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3353